

#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## (신복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92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10월 17일  
발 의 자: 신복자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경기문, 김동욱, 박환희,  
소영철, 유정인, 이민석,  
장태용, 채수지, 최호정,  
홍국표 의원(10명)

### 1. 제안이유

-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2020.3.24.), 시행(2021.3.25.)되었으나 서울시에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의 시행에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.
- 나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다.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라. 치유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근거를 마련함(안 제4조)
- 마.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)
- 바.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(안 제6조)
- 사. 치유농업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(안 제7조)
- 아. 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 근거, 구성과 위원의 임기, 위원장의 직무, 협의회의 운영,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~안 제13조)

자.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4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

##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자원의 다원적 가치 확산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치유농업”이란 시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·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·농촌자원(이하 “치유농업자원”이라 한다)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.
2. “치유농업서비스”란 심리적·사회적·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,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치유농업시설”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(장비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.

1.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
2.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
3.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4.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5.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,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실태조사)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사업)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의 마련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·보급에 관한 사업
2.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
3.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·체험·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

4. 치유농업 관련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치유농업센터의 설치)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8조(치유농업협회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치유농업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협회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
3.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협회의 구성) ① 협회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회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협회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

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2. 치유농업 관련 서울특별시 공무원
3.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
제10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협의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,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3조(수당 등) 시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